

(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Sor.1/2561호

투자위원회 고시 제2/2557호에 따른 투자촉진 활동 유형의 추가

불기 2557년(2014년) 12월 3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2/2557호 「투자 촉진 정책 및 기준」에 대하여 투자청은 불기 2520년(1977년) 투자촉진법 제16조 2번째 단락에 의거하여 불기 2557년(2014년) 12월 3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2/2557호에 첨부된 투자 촉진 유형의 Section 7의 세부 항목을 추가하여 다음의 조건과 인센티브(권리 및 혜택)를 규정한다.

Section 7 서비스 및 공공 유틸리티

활동	조건	권리 및 혜택 (인센티브)
7.28 상품 종합 거래 및 개발 센터	특별경제개발 구역에 위치할 경우 조건 1. 등록 자본금의 51% 이상을 태국인 국적자가 보유해야 한다. 2. 상품 전시 및 거래 공간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 보관을 최신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 유통센터가 100,000m ² 이상 갖추어야 한다. 3. 온라인 상품 거래 서비스 시스템(e-Commerce Platform)과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 거래가 가능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4. 상품거래지원 서비스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물류 서비스, 금융 서비스, 보험 서비스, 서류 지원 서비스(문서 서비스) 등 5.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 및 상품개발 센터를 다음의 조건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 5.1 사업운영에 대한 컨설팅 분야의 전문가를 마련해야 한다. 5.2 위원회에서 적절하다 판단되는 바에 따른 기술, 설계 또는 상품 개발에 대한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5.3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 및 상품 개발 센터 운영비가	A3

	<p>첫 수입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천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p> <p>5.4 위원회에서 적절하다 판단되는 바에 따른 지역 기관(짙앗:道와 유사한 태국 행정 구역, 지방 관청 등)과 구매 및/또는 지역 제품 납품 그리고 지방 사업가 개발 등에 대한 협업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p> <p>인센티브(권리 및 혜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소득세 8년간 면제(토지 대금 및 운영 경비를 제외한 투자금에 대한 100%에 한함) 2. 법인 소득세 면제 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일반 법인 소득세율에서 50% 감면 3. 특별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촉진 정책에 따른 기타 인센티브(권리 및 혜택) 4. 법인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수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4.1 프로젝트의 토지 임대 수익 4.2 상품 전시 개최 수익 4.3 상품 유통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 (태국 국내 운송에서 발생한 소득, 통관 수속에서 발생한 수익, 해상 또는 항공 운송에서 발생한 수익 등은 포함하지 않음) 4.4 사업자 교육개발 훈련비에서 발생한 수익 5. 투자촉진 신청서를 불기 2561년(2018년) 12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p>특별경제개발구역 밖에 위치할 경우 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입 등록자본금이 1천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2. 등록자본금의 51% 이상의 주식을 태국인 국적자가 보유해야 한다. 3. 상품 전시 및 거래 공간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 보관을 최신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 유통센터가 100,000㎡ 이상 갖추어야 한다. 4. 온라인 상품 거래 서비스 시스템(e-Commerce Platform)과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 거래가 가능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A3</p>
--	---	---------------------------------------

	<p>5. 사업지원서비스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물류 서비스, 금융 서비스, 보험 서비스, 서류 지원 서비스 (문서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지원 서비스를 갖추어야 한다.</p> <p>6.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 및 상품개발 센터를 다음의 조건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p> <p>6.1 사업운영에 대한 컨설팅 분야의 전문가를 마련해야 한다.</p> <p>6.2 위원회에서 적절하다 판단되는 바에 따른 기술, 설계 또는 상품 개발에 대한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p> <p>6.3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 및 상품 개발 센터 운영비가 첫 수입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15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p> <p>6.4 위원회에서 적절하다 판단되는 바에 따른 지역 지역 기관(짱왓^道와 유사한 태국 행정 구역, 지방 관청 등)과 구매 및/또는 지역 제품 납품 그리고 지방 사업가 개발 등에 대한 협업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p> <p>7. 방콕이나 짱왓* 싸뭇쁘라껌(Samut Prakarn)에 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투자촉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태국 행정구역명과 순서는 현지에서의 쉬운 활용을 위해 태국식 표현을 따름. 태국에서 지명과 행정구역은 한국과 달리 행정구역 + 지명 순임)</p> <p>8. 특별경제개발 구역 내 투자는 다음의 투자촉진 활동 유형 중 한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 농산품 거래 센터(면적은 10라이 이상이어야 함) (1라이는 약 1,613m²) - 7.4.1 유통센터(DC: Distribution Center) - 7.29 상품 거래 및 개발 센터 <p>그리고, 위 세 개 중 하나의 프로젝트는 특별경제개발 구역 밖의 프로젝트와 투자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p> <p>9.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신청서를 다 같이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특별경제개발구역에 들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절차는 연장될 수 없다.</p> <p>인센티브(권리 및 혜택)</p> <p>1. 특별경제자유구역 내 들어서는 프로젝트의 토지대금 및 운영경비를 제외한 투자금의 100%에 대해 8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은 특별경제개발구역 내 들어선 프로젝트의</p>	
--	--	--

	<p>투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용할 수 있고 상기 법인소득세 면제액은 특별경제개발구역에 들어서는 프로젝트의 실제 발생한 투자금액을 넘을 수 없다.</p> <p>2. 법인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수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p> <p>2.1 프로젝트의 토지 임대 수익</p> <p>2.2 상품 전시 개최 수익</p> <p>2.3 상품 유통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 (태국 국내 운송에서 발생한 소득, 통관 수속에서 발생한 수익, 해상 또는 항공 운송에서 발생한 수익 등은 포함하지 않음)</p> <p>2.4 사업자 교육개발 훈련비에서 발생한 수익</p> <p>3. 투자촉진 신청서는 불기2561년(2018년) 12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p>	
--	--	--

본 고시는 불기 2560년(201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일 불기 2561년(2018년) 1월 31일

(General Prayut Chan-o-cha)

투자위원회 의장